

#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90번지 일원

#### ■ 공급규모

####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 지하 2층 ~ 지상 26층, 아파트 5개동, 총 474세대(특별공급 포함)
- 특별공급 총 227세대(예정)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46세대	46세대	83세대	12세대	40세대

#### ■ 입주예정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특별공급 포함)

(단위 : m<sup>2</sup>, 세대)

구분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총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01	074.7163A	74A	74.7163	23.4524	98.1417	39.8092	137.9509	155
	02	074.7163B	74B	74.7163	23.4254	98.1417	39.8092	137.9509	20
	03	084.9156A	84A	84.9156	26.0468	110.9624	45.2434	156.2059	223
	04	084.9222B	84B	84.9222	27.4532	112.3754	45.2469	157.6224	76
합계									474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4m<sup>2</sup>이하 주택형에만 추천이 가능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74A		74B		84A		84B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등	3	15	0	0	3	15	1	5	7	35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0	0	0	3	15	1	5	6	3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0	0	0	3	15	1	5	6	30	
중소기업 근로자	2	10	1	5	4	20	1	5	8	40	
장애인	경기도	2	10	1	5	3	15	1	5	7	35
	서울특별시	2	10	0	0	3	15	1	5	6	30
	인천광역시	2	10	0	0	3	15	1	5	6	30
소계	15	75	2	10	22	110	7	35	46	230	

- ※ 해당기관에서는 적격대상자(예비자 포함) 명단을 구분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3.03.31.)에 의거 기관추천 예비자 비율을 500%로 확대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정 계획

구분	일정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	2023. 11. 23.(목)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 견본주택 개관	2023. 11. 24.(금) (예정)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77-3번지
•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23. 12. 04.(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3. 12. 12.(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당첨자 서류접수	2023. 12. 15.(금) ~ 2023. 12. 17.(일) (예정)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	2023. 12. 26.(화) ~ 2023. 12. 28.(수) (예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는 적격대상자(예비자 포함) 명단을 구분하시어 2023.11.29.(수)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li>•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li> <li>•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등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li> </ul>
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붙임.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p><b>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li>• '소형·저가주택 등' 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p><b>청약 자격 요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적용)</li> <li>※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th> <th style="width: 25%;">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b>당첨자 선정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li> <li>•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됩니다.</li> </ul>																				
<p><b>예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li> </ul>																				

#붙임.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p><b>당첨자 선정</b></p>	<p>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li> <li>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li> <li>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li> </ul> </li> <li>•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공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공 배정 시 일반예비 지위는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공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예비 선택이 불가합니다.</li> <li>- 다만, 특공 예비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li> </ul> </li> <li>•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ul>
<p><b>유의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li> <li>•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li> </ul>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자 명단

■ 추천양식(확정자)

주택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비고

■ 추천양식(예비자)

주택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비고

※ 통상 주택평형은 세대별 공급면적(m<sup>2</sup>)×0.3025로 산출(예:108.5734×0.3025=32.8434 ≒ 32평)

※ 예비추천자 배정물량(500%)을 대상자와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